

## 기술위원 선임 및 자격

기술위원은 연수2회(기술위원회에서 주관) 및 자격시험을 거쳐 상임기술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기술위원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(1)항을 공통으로 포함한 (2)~(4)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- (1) 연령이 만 5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자.
- (2) 1급 심판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심판활동을 한 자.
- (3) 본 협회 경기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.
- (4) 위 (2),(3)항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

① 본 협회 경기위원장, 혹은 심판위원장을 역임했거나 현재 역임 중인 자.

② IHF, AHF에서 기술위원 연수 받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자.

③ IHF, AHF에서 활동을 위촉받아 트레이닝이 필요한 자.

- (5) 이상 (1)항을 공통으로 포함한 (2)~(4)항에 각각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상임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2회 및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70%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기술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 단, (4)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면제한다.

- (6) 기술위원으로 선임된 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기본연수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위원 강습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각 대회에 파견될 수 있다.